

제44회 영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00. 4. 26 (수) 10:00

의 안

- 영주시농공지구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
비용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영주시농공지구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112
----------	-----

제출년월일 : 2000년 4월 일

제출자 : 영주시장

1. 폐지이유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근거로 하여야 하나, 현행 영주시농공지구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01. 8. 1) 제정 전의 수질환경보전법('90. 8. 1)을 근거로 하고 있어 개정이 요구되기에 환경부 질의 등, 자체 검토결과 등 조례의 내용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모두 명시되어 있고 또한 현재 영주시의 처리시설은 인근 지역의 생활하수가 유입되지 않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만 처리하고 있으므로 조례 운영보다는 비용부담 규정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므로 조례를 폐지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농공지구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영주시농공지구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를 폐지함.

3. 폐지조례(안) : 덧붙임

4. 참고자료 : 덧붙임

- 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조례 존치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산폐 67711 - 138(2000. 1. 31) (사본) 1부.
- 나. 관련 법령(발책) 1부.

영주시농공지구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영주시농공지구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환 경 부

우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전화(02)500 - 4292 / 전송(02) 504 - 5445
 사인메스카 과장 학기선 사무관 김지연 담당자 채수민(chaesoo@me.go.kr)

문서번호 산대67711- 1328

시행일자 2000. 01. 31

장 유 경상북도지사

장 유 영주시장

선	보건환경청장	지	
점	일자	시	
수	시간	결	수진보
	번호	재	오수관리담당
	처리과	공	
	담당자	관	
		람	

제 목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조례 준차 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

1. 영주시 환경 6/710-155(2000.1.20)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가. 영주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 폐지 가능여부?

나. 조례가 폐지될 경우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위탁을 공법상 계약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비용부담 규정(훈령)을 마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3. 회신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을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규정"을 제정·운영하여야 하며, "영주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가 종 규정과 동일하다면 조례를 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처리시설에 인근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처리할 경우에는 효율적 처리시설 운영방안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위탁은 해공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부고시 제97-89호('97.10.8)의 규정에서 정하는 자에게 위·수탁 계약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환 경 부 장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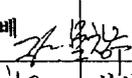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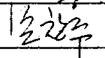
전결 산업폐수과장

3

1	2	3	4	5	6	7	8	9	10

영 주 시

우*750-701* 경북 영주시 휴천2동 470번지 / ☎(0572) 639-6181 / FAX 639-6189
환경보호과 과장: 정강수, 환경관리담당 문창주, 담당자 김형배

문서번호	환경 67710 - /55	보존기간		시 장
시행일자	2000. 1. 20. (년)	공개여부	공 개	
공개여부	공개	부시장		
경 유	경상북도지사	국 장		
발 음	환경부장관	과 장	전.결	
참 조		기안자	김형배 	협 조
		심사자	정강수 	심사일
				1. 20

제 목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운영 조례 존치 여부 질의

1.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설치·운영중인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과 관련,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화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

1) 영주시농공지구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 제정('95. 1. 9)

2) 환경오염 방지사업 비용부담계획 승인('97. 8. 4·대구지방환경관리청)

3) 운영실태

· 관리·운영 전반을 환경부 고시 제97-89호('97. 10. 8,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자지정 고시)에 의거 민간 참여 없이 입주기업협의회와 위탁 운영 협약 체결에 의하여 입주기업협의회에 위탁 운영중

나. 질의 내용

1)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내지 제27조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 내지 제14조 규정에 의거 유지, 관리가 가능 함에도 영주시농공지구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를 적용하는 것은 입주업체에 대하여 중복 규제사항 이라는 의견이 도출되어 행정 규제개혁 차원에서 동 조례 폐지가 가능한지 여부 ?

2) 만약 동 조례가 폐지될 경우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사항을 입주기업협의회와 공법상 계약으로 운영 가능한 지 아니면 비용부담 규정(훈령)을 마련하여 적용 하는지 여부 ?

나. 해석상 의견

1) “갑”설 :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의 수혜자가 농공단지내의 입주업체에만 한정되고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내지 제27조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 내지 제14조 규정에 의거 유지관리가 가능 하기에 동 조례를 폐지하고 입주 기업협의회와 공법상 제약 사항으로 유지·관리가 가능 하다는 설

2) “을”설 : 동 조례를 폐지하고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내지 제27조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 내지 제14조 규정과 관련하여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 강화를 위하여 비용부담규정(훈령)을 작성하여 적용 하여야 한다는 설

3) “병”설 : 환경오염 방지사업 비용부담계획 승인('97. 8. 4. 대구지방 환경관리청)을 득하여 운영중 이므로 조례를 폐지하고 비용부담계획 승인 사항으로 유지·관리가 가능 하다는 설

4) “정”설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내지 제27조 및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2조 내지 제14조 규정에 의거 유지관리 전반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 하다는 설

다. 우리시 의견 : “갑”설이 타당함.

1) 사유 :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시 환경부에 기본 계획 승인 후 설치되었으며 운영중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비용부담계획 승인을 받아 운영되기에 동 조례를 폐지하고 입주 기업협의회와 공법상 제약만으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끝.

영 주 시 장

관 련 법 령 (발취)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한 사업 시행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종말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기타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6조(종말처리시설의 기본계획) ①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말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환경오염방지사업의 실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이하 “시행자”라 한다)은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 또는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기타 환경보전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오염방지사업(이하 “방지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행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에서 방지사업의 원인이 되는 사업 활동을 하거나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이하 “방지사업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업부담금의 총액은 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방지사업부담금은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정도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업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방지사업의 종류)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방지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2. 공장 또는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대기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녹지의 형성, 중앙열공급시설 및 공공용 녹지의 설치와 그 관리사업
 3.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농경지·어장, 산림 또는 농업용 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객토·삭토·복토·준설사업, 토양개량제시용사업, 산림 또는 농업용 시설개축사업
 4. 특정한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배수설비 등 시설의 설치사업
 5. 환경오염으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주택 기타 시설의 이전사업
 6. 기타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및 동 공단이 동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법인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준하는 방지사업 실시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환경부장관을 제외 한다. 이하 제16조에서 같다)가 방지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사업의 시행기간·종류·규모·사업지역·사업비, 예상원인자의범위, 사업효과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두는 비용부담에 관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사업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계획서의 사본을 송부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비용부담계획) ① 시행자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계획(이하 "비용부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부담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시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강제징수) 환경부장관 또는 시행자는 개선부담금과 방지사업부담금을 납부 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간내에 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관리공단이 시행자일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환경관리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탁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관리공단은 징수된 금액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업무처리요령】

〈환경부간행물등록번호 38000-67710-67-9914〉

1. ~ 3. 〈생략〉

4. 환경오염방지사업 및 비용부담계획 승인

가. ~ 나. 〈생략〉

다. 비용부담계획 승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6조)

(1) ~ (2) 〈생략〉

(3) 비용부담계획 승인 신청서 작성 요령

○ 방지사업 총 소요사업비 ~ ○ 원인자별 비용부담기준 〈생략〉

○ 부담금의 부과징수 방법 및 시기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작성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일반적 사항

· 시설설치비 부과, 납부 및 정산

· 유지관리비 부과기준 및 납부등 기타사항

- 공동처리 구역 내 지역 주민 등이 포함될 경우 관할지자체는 효율적 처리시설 운영방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조례 또는 직접부담 방안등 비용부담규정을 작성
- 비용부담 규정에는 원인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에 대해서 부과 방법, 부과금액, 납부시기 및 장소, 소요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 되어야 함.

○ 기타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생략>

5. ~ 8. <생략>

의안검토보고서

1. 의안

- 의안번호 : 제 112 호
- 의안명 : 영주시농공지구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 해당부서 : 산업건설국 환경보호과

2. 폐지이유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근거로 하여야 하나, 현행 영주시농공지구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91. 8. 1) 제정전의 수질환경보전법('90. 8. 1)을 근거로 하고 있어 개정이 요구되기에 환경부질의 등, 자체 검토결과 등 조례의 내용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모두 명시되어 있고 또한 현재 영주시의 처리시설은 인근 지역의 생활하수가 유입되지 않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만 처리하고 있으므로 조례 운영보다는 비용부담 규정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므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농공지구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영주시농공지구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를 폐지함

4. 검토의견

영주시농공지구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농공지구폐수종말처리장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영주시농공지구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를 폐지하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농공지구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본 폐지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 영주시농공지구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91. 8. 1)을 근거로 해야 하나 수질환경보전법('90. 8. 1)을 근거로 하고 있어 제35회 임시회('99. 3.10)시 상위법과 유기적인 통일성 확보 및 조례의 현실적 적용가능성을 고려한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 영주시 농공지구 폐수종말처리장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해 시행이 가능함에도 조례를 적용하는 것은 입주업체에 대한 중복규제의 문제가 있으며
- 조례의 존치여부 질의에 대한 환경부 회신(산폐 67711-138, 2000. 1. 31) 내용은
 - 조례와 동일한 규정을 제정·운영한다면 조례를 폐지할 수 있고
 - 다만, 처리시설에 인근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처리할 경우에는 효율적 처리시설 운영 방안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 바, 우리시의 경우에는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만 처리하고 있으므로

본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00. 4.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호 섭